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소라 의원 외 29명
- 나. 의안번호: 제2988호
- 다. 발의일자: 2025. 8. 11.
- 라. 회부일자: 2025. 8. 14.

2. 제 안 사 유

-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에어컨 실외기, 고성방가 등)이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령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개인 유발 생활소음 및 진동을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간 갈등 예방 및 주거환경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개인이 유발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방안 신설(안 제15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 토 의 건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공간에서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악기연주, 고성방가 등) 또는 기계·기구·시설 등의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충간소음 제외)을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으로 정의하고, 이의 관리와 피해 예방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충간소음’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직접 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음(「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충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1),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2),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3)).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충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충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생활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는 확성기 소음, 배출시설 미설치

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충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 2. (생 략)

3. "충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충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충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충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조(충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장, 공사장 및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15조는 주거 공간에서 악기 연주, 고성방가 등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나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기계·기구·시설의 작동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으로 정의하고 시책 수립, 민원대응 및 분쟁해결 지침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고성방가, 에어컨 실외기 소음, 운동기구 사용 소음, 반려동물 활동 소음⁴⁾ 등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은 층간소음으로 인식되어 이웃 간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⁶⁾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에 비추어볼 때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은 정의가 모호하고 해당 소음·진동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거공간 내 모든 소음·진동에 대해 일률적·개별적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 생활 공간에서의 행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는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23.4.) 소음 정의 규정에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를 포함(임기만료폐기).

5)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결국 이사…이웃 괴롭힌 ‘실외기’(서울신문, ’24.9.6.).
유명무실 관리위, 노후아파트…꼬인 층간소음 해법(헤럴드경제, ’23.9.13.).

6)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발생 되는 소음·진동(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사람 육성 등.